

제주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19가단585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B

소송대리인 1. 변호사 고창후

2. 법무법인 동산

담당변호사 김철웅

변론 종결2021. 12. 21.

판결 선고2022. 2. 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9. 3. 11. 접수 제2144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형이다.

나. 원고는 C에게 2018. 4. 10.에 3,000만 원, 2018. 6. 5.에 3,720만 원, 2019. 1. 22.에 10만 원, 합계 6,73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제한법의 제한보다 높은 이율로 빌려주었고, C로부터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받았으나 전부를 변제받지는 못하였다.

다. C은 2019. 3. 8.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소 2019. 3. 11. 접수 제2144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그런데 C은 D조합으로부터 2018. 5. 11. 9,000만 원을, 2018. 7. 19. 1억 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억 4,700만 원, 1억 1,7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고, 2018. 7.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4억 원 상당이었다.

마.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각 대출계약도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등기소 2019. 4. 4. 접수 제29714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관련한 이자를 연체 없이 변제하였으나 각 대출원금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갑 제1, 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원고에게 2018. 5. 11. 110만 원, 2018. 5. 15. 475만 원, 2018. 7. 18. 190만 원, 2018. 8. 18. 610만 원, 2018. 10. 14. 100만 원, 2018. 12. 31. 2,9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돈은 별지 총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마지막 변제일인 2018. 12. 31. 이전에 발생한 채권(2018. 4. 10.자 3,000만 원 및 2018. 6. 5.자 3,720만 원)의 이자, 원금에 법정변제총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 2018. 12. 31. 기준 32,545,588원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3. 8.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은 32,545,588원 및 위 돈에 대한 2019. 1. 1.부터 2019. 3. 8.까지 67일의 기간 동안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433,789원(= 32,545,588원 × 0.24 × 67/365, 원 미만 버림), 마지막 변제가 이루어진 2018. 12. 31. 이후에 발생한 2019. 1. 22.자 대여금 1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2.부터 2019. 3. 8.까지의 46일 동안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024원(= 10만 원 × 0.24 × 46/365, 원 미만 버림)의 합계 34,082,401원(= 32,545,588원 + 1,433,789원 + 10만 원 + 3,024원)이고, 위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발생한 대여금

원고는 원고가 2019. 3. 8. 이후 C에게 각 대여한 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각 대여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는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C이 원고에 대하여 34,082,40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관련된 각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갚는 등 부담부 증여를 받은 것이고, 또한 피고와 E가 C에게 3억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C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대출채무 인수와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이 사건 각 대출원금 합계액은 1억 9,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1억 9,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인수한 뒤 그 이자를 갚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악의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C에게 채무변제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6. C의 처 F에게 1억 2,000만 원, 같은 달 7. C의 딸 G에게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C의 누나인 E가 2018. 12. 20. G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C이 그 무렵 채권자들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구상금 채권을 갖는 채권자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한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C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반복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희진

별지

1) 피고는 '원고와 같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및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설행하여 판단한다.